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미 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1. 6.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대상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함.

2. 주요내용

[안건1]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1) 제안설명

옛 전통나루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쉼의 공간(休) 즐길의 공간(樂) 교류와 소통의 공간(痛)” 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 하고자 함

2) 취득재산

- 토 지 : 6,160㎡(양호동 313-1외 7필지)
- 건 물 : 900㎡(나루문화체험관 외 2동)
- 나루터조성 : 3개소(비산나루외 2개소)
- 기준 가 격 : 4,875,470천원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안건2] 불용 시유재산 매각

1) 제안설명

양포파출소 건립 부지교환 및 낙산보건진료소 신축이전 등으로 발생한 불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매각재산

- 토 지 : 523m²
- 건 물 : 284m²
구)원평파출소, 구)낙산보건진료소, 구)해평관사
- 기준가격 : 1,660,348천원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11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4,875,470				
취득	소계		6,160	835,470				
	토 지 (답)	양호 313-1	3,208	417,040	2011년	낙동강신나루 문화벨트조성	거의동434 김대석	
	토 지 (답)	양호 313-2	3	390	"	"		
	토 지 (전)	양호 332-1	63	8,190	"	"	황상동313-2 손병락	
	토 지 (전)	양호 332-9	42	5,460	"	"		
	토 지 (과)	양호 335-1	1,192	154,960	"	"	도량동88 주공309/506 김기운	
	토 지 (과)	양호 335-11	1,487	208,180	"	"		
	토 지 (대)	양호 335-5	127	31,750	"	"	국)재무부	
	토 지 (대)	양호 332-4	38	9,500	"	"		
	소계		900	2,990,000				
	건물	나루문화체험관	500	1,990,000	2013년	낙동강신나루 문화벨트조성	신축	
	건물	주막촌	200	700,000	"	"	"	
	건물	보부상밋사공숙소	200	300,000	"	"	"	
	소계			1,050,000				
	기타	양호나루터		400,000	2013년	낙동강신나루 문화벨트조성	신축	
	기타	비산나루터		350,000	"	"	"	
	기타	동락나루터		300,000	"	"	"	
계	소계		523 (284)	1,660,348				
매각	토지 (건물)	원평 121-5	224 (134)	1,591,793	2011년	불용재산 매 각	구미시	
	토지 (건물)	해평 낙산 604 낙산 607-3	232 (74)	16,555	"	"	구미시	
	토지 (건물)	해평 월호490-12 B동 202호	67 (76)	52,000	"	"	구미시	

취 득 재 산 현 황

□ 재산의 표시

○ 토지매입 : 8필지 6,160㎡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사업비(천원)	비 고
동	지 번				
구미시 양호동	313-1	답	3,208	835,470	가감정가
	313-2	답	3		
	332-1	전	63		
	332-4	대	38		
	332-9	전	42		
	335-1	과	1,192		
	335-5	대	127		
	335-11	과	1,487		

○ 건물신축 : 3동 900㎡

명 칭	지 번	지 목	면 적(㎡)	사업비(천원)	비 고
나루문화체험관	313-1외 7필	전,답,과,대	500	1,990,000	
주막촌			200	700,000	
보부상및사공숙소			200	300,000	

□ 위치도



□ 재산의 표시

○ 나 루 터 : 3개소

명 칭	위 치	지 목	단위	사업비(천원)	비 고
양호나루터	양호동 607-2일원	천	1식	400,000	선착장
비산나루터	비산동 584일원	천	1식	350,000	"
동락나루터	임수동 501일원	천	1식	300,000	"

□ 조감도



매 각 재 산 현 황

□ 재산의 표시

○ 매각재산위.치 : 원평동 121-5번지(구, 원평파출소)

○ 지목 및 면적 : 대지 224㎡, 건물 134㎡

□ 재산 위치도



□ 현황사진



매 각 재 산 현 황

□ 재산의 표시

○ 매각재산위치 : 해평면 낙산리 604번지 외1(구, 낙산보건진료소)

○ 지목 및 면적 : 대지 232㎡, 건물 74㎡

□ 재산 위치도



□ 현황사진



매 각 재 산 현 황

□ 재산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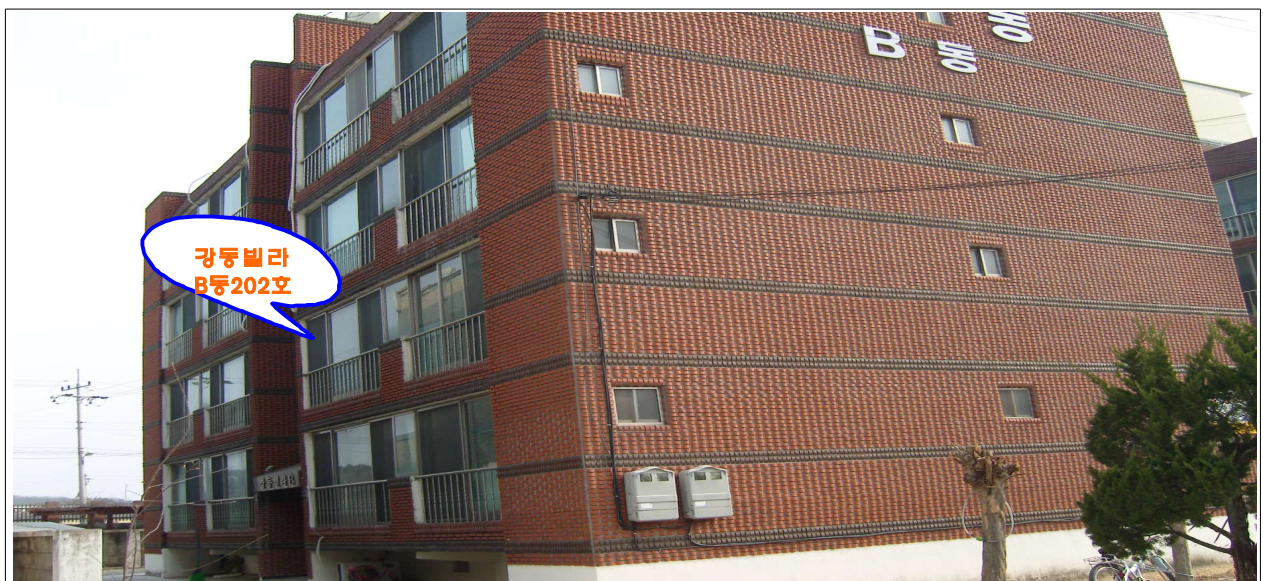
○ 매각재산위치 : 해평면 월호리 490-12번지 강동빌라 B동 202호

○ 지목 및 면적 : 대지 541 중 67㎡, 건물(주택) 76㎡

□ 재산 위치도



□ 현황사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사·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사·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